<의안번호 제2007-18호>

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7. 5.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다. 회부일자 : 2007. 7. 5.

2. 개정이유

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거주외국인의 지위(안 제3조)

-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에 준하는 지위로 개념을 정립함

나. 지원대상(안 제5조) : 군내에 거주외국인 등

다. 지원범위(안 제6조) :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, 상담,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·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

라. 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7조부터 제13조)

- 시책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둠

마.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(안 제14조)

- 외국인 지원 단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바. 업무의 위탁(안 제15조) :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

사. 세계인의 날(안 제16조)

-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, 그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며,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

아.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(안 제17조, 제18조) :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 포상 또는 명예군민으로 예우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1조부터 제3조·제8조·제11조·제19조·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7. 4. 24. ~ 5. 15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6. 11. 7.「**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**」과 「**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**」이 시달되어 후속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**『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』**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례가 시행되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

○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**「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」과「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」을 근간으로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**

- 제5조(지원대상)에서 표준안에 대비하여 3호에 "국제결혼 이민자"를 신설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신설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○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